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 인재 육성 지원(안 제5조)
- 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6조)
- 사업의 위탁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4887, FAX: 3396-8632, 메일 : mj80041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단체” 라 함은 청소년 활동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인재 육성지원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 내(이하 “관내” 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

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

4. “초·중·고등학교” 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정규 교과과정” 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재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인재 육성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인재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관내 거주 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국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한국사 등)과 연계된 학습 지원사업의 온·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의 온·오프라인 강의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 육성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제7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